

코웨이 주식회사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2012년 11월 28일 전면개정
2014년 2월 13일 부분개정
2019년 3월 29일 부분개정
2019년 4월 29일 부분개정
2019년 10월 28일 부분개정
2020년 2월 7일 부분개정
2020년 5월 7일 전면개정
2023년 2월 14일 부분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코웨이 주식회사("회사")의 정관 제 42조 제 1항 제 1호,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경영위원회("위원회")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 5조 제 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한다.
- ② 제 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사업 추진, 사업철수, 전략적 제휴, M&A 등 중요 사업 전략
 2. 중요한 소송의 제기, 취하 또는 화해
 3. 자회사 및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 투자, 지급보증 기타 자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운전자금 용도의 한도대출의 인출 및 상환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의 증대, 채무인수, 채무면제, 담보제공, 채무보증, 사채 관련 중요한 사항의 변경
 5. 조직별 예산증액에 관한 심의 및 결정
 6. 회계기준 또는 회계정책의 중요한 변경

제 10 조 (보고사항)

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회사 임직원에게 회사의 경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1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 1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전면개정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부분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부분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부분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부분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부분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전면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부분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